

전문의 자격시험 관련 수련특례 적용기준('25.10월)

□ 목적 및 근거

- (목적)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자격을 한시적으로 완화함으로써, 의료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도모하기 위함
- (근거) 「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(전문의수련규정)」 제5조제7항, 「전문의수련규정 시행규칙」 제18조의2, 「전공의 임용시험 지침」 III. 7,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17차 회의('25.10.17.)

□ 적용 대상

- '26년 8월 말까지 전공의 과정 수료 예정자
※ 대한의학회에서 적용대상자 명단 확정 및 관리

□ 전문의 자격시험 특례 적용사항

현행 규정	특례사항
전공의 수련과정 이수자 또는 이수예정자(~5월말)인 경우 2월 전문의 시험 응시 가능	'26.8월말까지 수료 예정인 자도 '26.2월 전문의 시험 응시 허용

- (현행)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는 전공의 수련과정 이수증명서 또는 이수예정증명서(당해 5월 31일까지 수료 예정자) 필요*
* 「전문의수련규정 시행규칙」 제10조 및 제11조
- (특례필요사항) '26.8월 말까지 레지던트 수료 예정인 경우 '27년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 가능하여, 수련 이수 후 6개월이 지나야 전문의 자격 취득 가능

○ (특례사항) '26.8.31일까지 수료 예정인 경우에도 '26.2월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자격 완화

- * 동 특례는 충실한 수련 이수를 전제로 하며, 시험 합격 후 8월말까지 수련을 마치지 못하는 경우 합격 취소 처리

□ 행정사항

○ 대한의학회는 전문의 자격시험 접수 완료 후 특례 적용 대상자 확정·관리

- * '26. 8월말까지 실제 이수 여부는 대한의학회에서 수평위 사무국을 통해 확인

** 문의 : gme@kams.or.kr, 02-6952-9518(9517)

별첨

수련 특례 근거 규정

□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(이하 “전문의수련규정”)

제5조(수련기간)

- ⑦ 제1항, 제2항,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수급 조절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공의의 수련기간 · 수련연도 및 추가 수련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1.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
 2. 제1호에 준하는 상황으로서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

□ 「전문의수련규정」 시행규칙

제18조의2(특례)

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,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수급 조절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공의의 임용, 수련과정 이수예정자의 명부 제출 및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1.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
2. 제1호에 준하는 상황으로서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

□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

III. 전공의 모집 및 선발

7. 전공의 모집 관련 특례 조치

- 의료인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,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전공의 모집 시기 및 과목, 지원자격 및 대상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17차 회의(10.17.)

④ 응급의료체계 유지 및 전공의 수련특례 관련 한시적 유예

- (전공의 수련특례) 전공의 관련 후속 조치 등을 위해 한시적(~10월말)으로 심각단계에 준하여* 조치

* (근거) 「전문의 수련규정」 제5조 제7항 제2호, 「전문의 수련규정 시행규칙」 제18조의2 제2호,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 Ⅲ. 7